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9. 10 선고 2023가단76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김말금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7. 16.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경북 예천군 D 답 472㎡에 관하여 2020. 1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3. 12. 28. 관리번호 예천군청 E 공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분한 80,843,942원에 대한 배분금출급청구권을 C(F생)에게 양도하고,
나. 한국자산관리공사(소관:대구경북지역본부)에 위 가.항의 배분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등에 대하여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C, G, H,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C, G, H은 연대하여 6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2014차6644호), 위 지급명령은 2014. 3. 5. 확정되었다.

나. C는 그 소유의 경북 예천군 D 답 4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손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2020. 12. 8. 접수 제167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경북 예천군은 1997. 12. 12. 이전 소유자 G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대한민국은 1999. 12. 13. 및 2001. 8. 8., 2008. 9. 23., 위 G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각 압류하였고, 이후 위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공매절차(관리번호 예천군청 E, 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 배분절차에서 제3취득자인 피고에게 10순위로 80,843,942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경북 예천군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C는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선순위 담보 등으로 인하여 그 경제적 가치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토지가액에서 선순위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것인데,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토지가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80,843,942원의 배분금출급청구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소관:대구경북지역본부)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